

특허심판원 코로나-19 대응 심판사무 운영지침 안내

한국 특허청에서 COVID-19 대응 심판사무 운영지침이 2020.03.25 일자로 시행되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기본적인 방침은, 기간 경과전 연장 신청 및 기간 경과후 사후 구제 신청을 통해서 구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.

참고로, 출원과 관련하여서는 '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기간경과 구제 신청서 등에 사유와 증명서를 제출하면, 사후적으로 구제'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구체적인 심판 사무 운영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<기간경과 前 신청>

국내·외 심판 당사자, 대리인이 심판 사건과 관련해 코로나-19 사유로 신청한 기일연장, 기일변경, 절차중지에 대한 취급

- 지정기간 연장은 총 3 회(3 月)까지는 증빙서류 없이 허용, 4 회부터는 증빙서류 제출 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승인

- 구술심리 등 기일변경은 신청시 적극 승인

- 절차 중지는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시 적극 승인하고, 사유가 해소되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다시 심리 진행

※ 다만, 절차중지는 당사자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만 허용됨

<기간경과 後 사후구제>

특허법인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, 특허법인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

T (02) 2188 5454

F (02) 2188 5455

E ip@BKL.co.kr

당사자, 대리인이 코로나-19 를 이유로, i)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 경과로 흠결을 해소하지 못해 무효 처분된 경우, ii)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, 경과 사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후구제 신청

단, 사유 소멸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무효 처분 또는 심판 청구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 년이 지난 후에는 사후구제 불가

<코로나-19 사건의 우선심판>

코로나-19 를 이유로 우선심사한 사건의 거절결정불복 심판에 대하여 우선심판 신청 허용

<재외자에 대한 국외송달>

대리인 없는 재외자(피청구인) 당사자계 사건으로서, 우체국의 국제우편물 접수중지로 인해 심판서류의 일부지역(일본 등) 국외송달 건이 발송 불가한 경우,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절차중지* 조치

(* 배송지연을 포함한 장애사유 발생한 국가에 해당하며, 우편상황 변동에 따라 이후 당사자 신청(증빙자료 첨부) 또는 심판관 직권으로 중지 취소)